

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1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 : 송명화, 김경영, 김인호, 김제리, 김종무, 김창원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 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 이성배, 이영실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한기영, 황규복 의원(26명)

1. 제안이유

-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은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점점 부상하고 있음. 이에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 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육성계획에 드론 '교육'사항을 추가함(안 제5조제2항제4호)
- 나.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산업행사·기술개발·연구사업”을 “산업행사·기술개발·교육 및 연구사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교육, 행사”를 “행사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) ① 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·지원
2.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드론 산업행사·기술개발·연구사업</u>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5. ~ 10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(드론의 저변확대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드론에 관한 경진대회, <u>교육, 행사</u>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,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 <u>산업행사·기술개발·교육 및 연구사업</u> ----- --</p> <p>5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드론의 저변확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<u>행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7조의2(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)</u> ① <u>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

1.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·지원

2.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문서번호	2021032500000006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송명화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3.25	
회신일 : 2021.03.29	내용문의 : 02-2180-7943

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 (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)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제7조의2(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)제2항은 2019년 드론교육원 및 드론과학실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대상학교	사업목적	사업대상	사업내용	보조금
드론교육원 조성	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	드론관련 통섭교육 및 드론산업관련 조종인력 양성	초·중·고 학생 및 일반인	- 드론교육원 조성(실내 드론교육센터 및 통섭교육센터 리모델링, 드론비행센터 신축, 드론비행연습장 및 드론시험장 조성) - 기자재 구입 - 드론 교육(체험, 통섭, 조종) 실시	1,600 (공사 10억, 기자재 5억, 운영 1억)
드론과학실 조성	서울공업고등학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산업정보학교	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인력 양성	초·중·고 학생	- 드론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구입 - 드론 조종관련 통섭교육 실시	300 (학교별 1억)

자료 : 서울시 교육정책과 ‘2019 드론교육시설 조성 지원계획(2019.5)’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= 194,500천원(연평균 38,9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·지원은 연 12회(월 1회) 드론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
-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은 1~3종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비용의 50%를 연 30명(종별 각 10명)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 = 194,500천원(연평균 38,900천원)
= 12,000천원(체험프로그램 지원)+182,500천원(자격증 취득 지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	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체험프로그램 지원 (제7조의2제1항제1호)	2,400	2,400	2,400	2,400	2,400	12,000
	자격증 취득 지원 (제7조의2제1항제2호)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	소계(b)	38,900	38,900	38,900	38,900	38,900	194,500
□ 총 비용(b-a)		38,900	38,900	38,900	38,900	38,900	194,500

- 체험프로그램 지원 : 회당 단가 200천원 × 12회 × 5년 = 12,000천원
 - 회당 단가 : 한국드론교육원(KDA)의 드론 진로체험 기본교육(안전교육, 조종법, 기본비행, 이착륙 게임 등) 최소 기준인 1회(2시간) 비용인 200천원 적용
- 자격증 취득 지원 : 1종 지원 77,500천원 + 2종 지원 67,500천원 + 3종 지원 37,500천원 = 182,500천원
 - 1종 지원 : 취득과정 단가 3,100천원 × 10명 × 50% × 5년 = 77,500천원
 - 2종 지원 : 취득과정 단가 2,700천원 × 10명 × 50% × 5년 = 67,500천원
 - 3종 지원 : 취득과정 단가 1,500천원 × 10명 × 50% × 5년 = 37,500천원
- ※ 1~3종 취득과정 단가 : 한국드론교육원(KDA)의 1~3종 취득과정 비용 적용
 - 1종(25~150kg) 3,100천원, 2종(7~25kg) 2,700천원, 3종(2~7kg) 1,500천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